의안번호	2209931
의 뢰 인	안호영 의원
회 답 일	2025.7.16.
추계번호	25B237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조(정의)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상세 사유

❑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1]를 추진하고 있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임

- (사업대상) 30인 이하 사업장,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

1) 퇴직연금사업운영(3061-318)의 내역사업

- (사업방법)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사업
- (지원내용) 근로자에 대한 사용주 부담금의 10%를 사용주 및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2025년 기준 1인당 최대 27만3천원), 사업장 1개소당 최대 30명, 최대 3년, 가입절차 간소화[2], 수수료 면제
- (시행경과) 2022년 4월 도입, 2022년 9월 사업주 재정지원 실시, 2024년 1월 근로자 재정지원 실시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개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다음의 사유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

○ 첫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사업대상자는 중소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중소기업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 130% 미만인 근로자의 규모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사업대상자의 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장래에 발생할 이들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가입 의사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검토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근거하여 지원되나, 중소기업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며, 이들의 보수가 장래에 발생할 경기변동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지원단가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2) 표준계약서 체결(사용자↔공단)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 둘째, 현재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는 1개 사업체당 최대 30명의 한도 내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므로[3], 개정안의 시행으로 30명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등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될 경우 이들 사업장 중 일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종사자 수가 30인을 초과하는 중소기업등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인원을 선별할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 셋째,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종사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3.2% 수준임

-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률은 종사자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구조로, 종사자 수가 30~299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률은 78.7%이고,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률은 91.7%임[4]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의 가입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가입된 퇴직연금 제도의 유무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의 가입 여부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이로 인한 행태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장래에 발생할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넷째,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5]는 국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제도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6]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지원수준)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연간 한도는 가입자 각각 27만3천원으로 하되 사업별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료: 통계청,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4.12.16

5)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16조의15(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지원수준[7]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8]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9]과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10]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이 하위규정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금의 요건과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

7) 제3조(지원수준) ①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의 지원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제2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에 한정한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부담금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부담금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연간 한도는 가입자 각각 27만3천원으로 하되 사업별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3호(2025. 1. 1. 시행)

9) 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연도"는 "가입연도"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일"로 본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매월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73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업: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고용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2. 제1호 이외의 사업: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액의 월평균 금액(「소득세법」 상 과세소득의 합계액을 해당사업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

10) 제4조(지원기간) 공단은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의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실시하되 지원기간은 해당 사업이 중소퇴직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